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8억 6천 1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8억 1천 6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8억 1천 6백만원
- 결 손 처 분 액 : 해당 없음.
- 미 수 납 액 : 해당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4.7%(전년도 100%)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861,197	815,653	815,653	-	-	-	94.7	100.0
세외수입	238,917	193,373	193,373	-	-	-	81.0	100.0
경상적세외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이자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기타이자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임시적세외수입	218,438	177,658	177,658	-	-	-	81.3	100.0
보조금 반환수입	159,440	112,093	112,093	-	-	-	70.3	1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12,093	112,093	-	-	-	70.3	100.0
기타수입	58,998	65,565	65,565	-	-	-	111.1	100.0
위약금	58,998	58,999	58,999	-	-	-	100.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그외수입	-	6,566	6,566	-	-	-	-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특별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보전수입등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전년도 이월금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269억 1천 1백만원
- 예산증감 : 8억 2천 3백만원 증액
- 예산현액 : 277억 3천 4백만원
- 지출액 : 268억 3천 4백만원
- 이월액 : 4억 3천 5백만원
- 집행잔액 : 4억 6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전년도 6.1%)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낙찰차액 2억 8천 8백만원, 지출잔액 1억 3천 4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천 8백만원, 예산절감액 4백만원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산	27,733,801	26,833,926	435,221	464,655	1.7
사업예산 계	27,411,282	26,520,135	435,221	455,926	1.7
자치경찰총괄과	2,766,186	2,711,941	-	54,245	2.0
서울형 자치경찰 조거정책 기반마련	2,766,186	2,711,941	-	54,245	2.0
자치경찰 제도 정비	638,564	622,430	-	16,134	2.5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46,053	144,492	-	1,561	1.1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82,889	168,589	-	14,300	7.8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309,622	309,350	-	272	0.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2,127,622	2,089,511	-	38,111	1.8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00	100,000	-	-	0.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06,292	1,468,299	-	37,993	2.5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521,330	521,211	-	119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자치경찰협력과	20,160,432	19,816,097	72,000	272,335	1.4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서울 구축	20,160,432	19,816,097	72,000	272,335	1.4
시-경찰 협력 강화	51,900	51,641	-	259	0.5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51,900	51,641	-	259	0.5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20,108,532	19,764,455	72,000	272,077	1.4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전환사업)	116,077	112,577	-	3,500	3.0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2,278,632	2,129,688	72,000	76,944	3.4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18,804	18,531	-	273	1.5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43,231	18,528	-	24,703	57.1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976,840	896,121	-	80,719	8.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79,175	79,175	-	-	0.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사업)	202,321	186,321	-	16,000	7.9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101,390	101,389	-	1	0.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91,756	691,104	-	652	0.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621,058	621,048	-	10	0.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330	-	300	0.7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54,034	-	-	0.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 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7,500	7,500	-	-	0.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7,006,020	7,006,020	-	-	0.0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46,625	227,348	-	19,277	7.8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70,430	70,400	-	30	0.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	50,558	50,482	-	76	0.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658,523	656,032	-	2,491	0.4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313,000	2,265,916	-	47,084	2.0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988,743	1,988,743	-	-	0.0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	2,185,136	2,185,136	-	-	0.0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6,096	36,096	-	-	0.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76,313	176,306	-	7	0.0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91,640	91,632	-	8	0.0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 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50,000	50,000	-	-	0.0
	자치경찰지원과	4,484,664	3,992,097	363,221	129,346	2.9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4,484,664	3,992,097	363,221	129,346	2.9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98,750	2,064,063	-	34,687	1.7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5,500	1,972,315	-	33,185	1.7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93,250	91,749	-	1,501	1.6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385,914	1,928,034	363,221	94,659	4.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전환사업)	71,242	62,738	-	8,504	11.9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 지역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 (전환사업)	197,706	197,469	-	237	0.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 지역경찰활동(한강경찰대) (전환사업)	513,883	512,733	-	1,150	0.2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1,231	21,231	-	-	0.0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581,852	1,133,864	363,221	84,767	5.4
행정운영경비 계		322,519	313,791	-	8,728	2.7
기본경비		287,098	278,371	-	8,727	3.0
재무활동		35,421	35,420	-	1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1급 기관장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보조 기관 기준으로 과소편성 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예산확보를 위해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백만원
- 2기 위원회 치안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1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백서 제작 예산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에서 ‘사무관리비’로 1천 6백만원
- 한강경찰대 정원증가에 따라 신규 수상요원 잠수장비 구매 예산확보를 위해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하철 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천 5백만원
등 총 3건, 1억 4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월비 : 2건, 4억 3천 5백만원

- 명시이월: 해당 없음.
- 사고이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동의 지연으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한 사유로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

사업)(시설비)」 사업비 사고이월

7천 2백만원

순찰정 구매과정에서 조달청의 업무처리기관 결정이 지연되어 납품 기한이
다음연도로 계약된 사유로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자산및물품
취득비)」 사업비 사고이월

3억 6천 3백만원

등 총 2건, 4억 3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4년도말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경찰청 등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6천 6백만원
- 매각·폐기 등 해당 없음.
- 2023년도 말 3억 3천 8백만원으로
- 총 수량 231개, 현재액은 4억 9백만원임.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024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illegible]

〈 서울경찰청 및 산하 31개 경찰서 2024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illegible]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8억 6천 1백만원이나 8억 1천 6백만원 징수 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4.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0%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861,197	815,653	815,653	-	-	-	94.7	100.0
세외수입	238,917	193,373	193,373	-	-	-	81.0	100.0
경상적세외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이자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기타이자수입	20,479	15,714	15,714	-	-	-	76.7	100.0
임시적세외수입	218,438	177,658	177,658	-	-	-	81.3	100.0
보조금 반환수입	159,440	112,093	112,093	-	-	-	70.3	1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12,093	112,093	-	-	-	70.3	100.0
기타수입	58,998	65,565	65,565	-	-	-	111.1	100.0
위약금	58,998	58,999	58,999	-	-	-	100.0	100.0
그외수입	-	6,566	6,566	-	-	-	-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지방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특별교부세	600,000	600,000	600,000	-	-	-	100.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보전수입등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전년도 이월금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2,280	22,280	22,280	-	-	-	100.0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위약금'은 한강경찰대 순찰정 납품 지연(기한 '23.12.30., 납품 '24.3.13)에 따른 지체상금임.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그외수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616만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 '기타이자수입'은 예산현액 대비(2천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6.7%(1천 6백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예산현액(1억 5천 9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3%(1억 1천 2백만원)로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기 타 이 자 수 입	20,479	15,714	15,714	△4,765	76.7%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12,093	112,093	△47,347	70.3%
그 외 수 입	0	6,566	6,566	-	순증

▶ 상세 사유

- 기타이자수입 : 집행잔액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전년도 집행잔액률(2.25%)로 본예산 추계하였으나,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소(1.5%)
- 그외수입 :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에 지급한 22~23년 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발생(5,984천원), 무인단속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부담금 산정착오로 차액 환급 발생(182천원) 등

-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과도한 차이 발생에 따른 세입결손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사안별로 모든 세입 예산에 대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그외수입’은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중 전문기관연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600만원)과 2023회계연도 발생한 수당 반납 등(60만원)을 다음연도인 2024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및 처리사유
2024-01-03	190,800	2023회계연도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분 반납 4건
2024-01-03	202,900	2023년 휴직자 복리후생비 지급 분 반납 1건
2024-04-02	6,820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청구 분(2022.12.2.) 반납
2024-02-22	181,800	무인단속장비 시설부담금 금액 정정으로 인한 환급금 반납
2024-03-13	5,983,780	'22년, '23년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합 계	6,566,100	

- 전문기관연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관련 세입은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로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가 2023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세입 처리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를 통해 지원되는 민간단체 관련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전문기관연계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

- 대상 :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
- 운영 :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구성 : 법, 분노조절, 상담심리, 역할극 등
- 예산 : 1인당 1만원 / 집단별(4인이하) 30만원 이내, (5인이상) 50만원 이내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96면 재인용.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 277억 3천 4백만원 중 268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불용액 4억 6천 5백만원)로 전년(6.1%) 대비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2.7%(일반회계 2.0%, 특별회계 4.4%)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27,733,801	26,833,926	435,221	464,655	1.7
사업예산 계	27,411,282	26,520,135	435,221	455,926	1.7
자치경찰총괄과	2,766,186	2,711,941	-	54,245	2.0
서울형 자치경찰 조거장착 기반마련	2,766,186	2,711,941	-	54,245	2.0
자치경찰 제도 정비	638,564	622,430	-	16,134	2.5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46,053	144,492	-	1,561	1.1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82,889	168,589	-	14,300	7.8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309,622	309,350	-	272	0.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2,127,622	2,089,511	-	38,111	1.8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00	100,000	-	-	0.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06,292	1,468,299	-	37,993	2.5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521,330	521,211	-	119	0.0
자치경찰협력과	20,160,432	19,816,097	72,000	272,335	1.4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서울 구축	20,160,432	19,816,097	72,000	272,335	1.4
시-경찰 협력 강화	51,900	51,641	-	259	0.5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51,900	51,641	-	259	0.5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20,108,532	19,764,455	72,000	272,077	1.4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전환사업)	116,077	112,577	-	3,500	3.0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2,278,632	2,129,688	72,000	76,944	3.4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18,804	18,531	-	273	1.5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43,231	18,528	-	24,703	57.1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976,840	896,121	-	80,719	8.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79,175	79,175	-	-	0.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사업)	202,321	186,321	-	16,000	7.9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101,390	101,389	-	1	0.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91,756	691,104	-	652	0.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621,058	621,048	-	10	0.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330	-	300	0.7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54,034	-	-	0.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 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7,500	7,500	-	-	0.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7,006,020	7,006,020	-	-	0.0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46,625	227,348	-	19,277	7.8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70,430	70,400	-	30	0.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	50,558	50,482	-	76	0.2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658,523	656,032	-	2,491	0.4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313,000	2,265,916	-	47,084	2.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988,743	1,988,743	-	-	0.0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	2,185,136	2,185,136	-	-	0.0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6,096	36,096	-	-	0.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76,313	176,306	-	7	0.0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91,640	91,632	-	8	0.0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 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50,000	50,000	-	-	0.0
		자치경찰지원과	4,484,664	3,992,097	363,221	129,346	2.9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4,484,664	3,992,097	363,221	129,346	2.9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98,750	2,064,063	-	34,687	1.7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5,500	1,972,315	-	33,185	1.7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93,250	91,749	-	1,501	1.6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385,914	1,928,034	363,221	94,659	4.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전환사업)	71,242	62,738	-	8,504	11.9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 지역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 (전환사업)	197,706	197,469	-	237	0.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 지역경찰활동(한강경찰대) (전환사업)	513,883	512,733	-	1,150	0.2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1,231	21,231	-	-	0.0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581,852	1,133,864	363,221	84,767	5.4
		행정운영경비 계	322,519	313,791	-	8,728	2.7
		기본경비	287,098	278,371	-	8,727	3.0
		재무활동	35,421	35,420	-	1	0.0

가. 예산의 변경사용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없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 1억 4천 2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기본경비	국내여비	39,200	-743	0	2024.11.15.	추가 변경사용으로 3번째 행 후술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31,800	0	743		32,543	32,543	0 (0.0%)
기본경비	국내여비	38,457	-16,000	0	2024.11.15.	22,457	15,158	7,299 (32.5%)
	사무 관리비	97,371	0	16,000		113,371	113,095	275 (0.2%)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000	-125,012	0	2024.9.4.	158,852 ※ 전년도 이월액 306,864	1,133,864	84,767 (5.4%) ※ 전년도 이월액 363,22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 찰대)(전환사업)		36,591	0	125,012		161,603	161,603	0 (0.0%)

- 자치경찰위원회는 ‘보조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과소 편성되어 있어 그 부족분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4만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변경사용하였고,¹⁾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A)		실제필요액(B)		부족분 (A-B)
	편성기준	예산액(연)	편성기준	예산액(연)	
	합 계	31,800	합 계	32,700	△900
위 원 장	1급(보조기관)	12,600	1급(기 관 장)	13,500	△900

※ 실제 부족분은 900천원이나 임기공백에 따른 차액 157천원 제외하고 743천원임.

1)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중 1천 6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음.

-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작은 2기 위원회 치안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1기 위원회 활동 사항 기록 백서 제작을 위한 것이나, 당초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지 않아 변경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백서 제작을 위한 필요 예산은 2천 2백만원으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 중 인쇄비 일부(6백만원)를 백서제작 예산으로 사용하고, 부족분 1천 6백만원은 ‘국내여비’로 충당하는 것임.

- 또한, ‘국내여비’는 변경사용으로 1천 764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730만원(불용률 32.5%)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음.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천 5백만원을 한강경찰대 정원 증가(39명 → 52명)에 따른 신규 수상요원 잠수장비 구매를 위해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하였음.

- 이는 2024년 8월 서울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²⁾ 한강경찰대 정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변경사용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 5백만원(불용률 5.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음.

※ 한강경찰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4조, 제28조, 제35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로, 한강경찰대는 한강 41.5km 인명구조, 수색활동, 범죄예방·단속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2)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제130차 개정된 훈령 제376호, 2024.8.13.) 별표 1에서 범죄예방대응과 한강경찰대 인원 증원에 따른 것임.

있으며, 2024년 8월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 한강의 치안력을 대폭 확충하고자 한강경찰대 대원이 39명에서 52명으로 총 13명이 증원되었음.

〈 한강경찰대 조직·인력 〉

○ 1대장(경정), 5팀(행정팀, 수상안전 4개팀) / 근무자 52명

구 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발족	2005	1992	2009	1992
소재지	마포구 망원동	용산구 이촌동	광진구 자양동	강동구 천호동
관할구역	행주 ~ 마포대교 (15.3km)	마포 ~ 한남대교 (8.3km)	한남 ~ 잠실대교 (7.9km)	잠실 ~ 강동대교 (10.0km)

○ 치안센터 4개소 : 망원(본대), 이촌, 뚝섬, 광나루 / 순찰정 9정



망원(본대)
(마포 ~ 행주)
순찰정 3척

이촌
(한남 ~ 마포)
순찰정 2척

뚝섬
(잠실 ~ 한남)
순찰정 2척

광나루
(강동 ~ 잠실)
순찰정 2척

⑫행주, ⑭방화, ⑮마곡, ⑯가양, ⑰월드컵, ⑱성산, ⑲양화, ⑳당산철교, ㉑서강, ㉒마포, ㉓원호, ㉔한강철교, ㉕한강, ㉖동작, ㉗반포, ㉘한남, ㉙동호, ㉚성수, ㉛영동, ㉜청담, ㉝잠실, ㉞잠실철교, ㉟올림픽, ㊱천호, ㊲광진, ㊳암사, ㊴강동대교

○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변경사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집행 형태라고 할 수 있는바, 자치경찰 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편의적인 이월 등 지양 필요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건 등 총 7건에 8억 4천 8백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023년에는 사고이월 2건, 3억 9천 5백만원, 2024년에는 사고이월 2건, 4억 3천 5백만원을 이월시키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사고이월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차년도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합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년	2	435,000	2	435,000	-	-
2023년	2	395,000	2	395,000	-	-
2022년	7	848,000	4	434,000	3	414,000

- 자치경찰위원회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2건, 4억 3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㉓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㉔	다음연도이월액㉕		집행잔액 ㉖-㉔-㉕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시설비	1,910,156	1,836,685	1,836,685	0	72,000	73,471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581,852	1,497,085	1,133,864	0	363,221	84,767

- ▶ 이월사유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동의 지연으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순찰정 구매과정에서 조달청의 업무처리기관 결정이 지연되어 납품 기한이 다음연도로 계약됨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의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유는 “중랑구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동의 지연으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것임.
- 이에 대해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주민간 이해관계 충돌 및 의견차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중랑구, 관할 경찰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다면 당해연도 내에 사고이월 없이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³⁾ 자치경찰위원회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인 협의 등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중랑구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일정(예산 3억원)

- '24년 2월 사업계획 및 방침수립
- '24년 3~4월 대상지 공모(3~4개소 선정)
- '24년 5월 공모대상지 현장 합동조사 및 최종대상지 심의선정
- '24년 6~7월 입찰공고 및 디자인업체 선정
- '24년 8~9월 주민의견수렴 및 디자인계획 수립
- '24년 10~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방침을 수립하였으나,
5월부터 대상지 선정, 8월 초 용역 발주,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고, 주민간 이해충돌 발생 등 전기인입공사추가로, 공사기간이 25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됨

※ 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5년 5월 27일, 138면 재인용.

- 또한, 동 사업은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자치구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이 선정된

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5년 5월 27일, 139면 재인용.

자치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 등으로 사업 기간 지연,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사월	사고이월	
2022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434,700	434,700	387,200	0	47,500	0
2023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시설비	600,000	568,317	480,161	0	88,156	31,683
202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시설비	1,910,156	1,836,685	1,836,685	0	72,000	73,471

▶ 이월사유

- 2022년 : 사업대상지 변경 및 자치구의 안전검사 선행에 따른 환경조성시기 지연
- 2023년 : 서대문구에서 시행중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공사 관급자재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인해 연내 공사 준공 불가
- 2024년 : 중랑구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동의 지연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사업은 중형 순찰정(2정) 건조·구매를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의뢰 요구('24.5.)를 하였으나 조달청 내부 사정으로 입찰이 늦어짐에 따라 순찰정은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여 완공시기를 다음연도('25.1.7)까지 계약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2024년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사업” 추진경과

- '24. 6 ~ 7월 : 사업발주(조달청 입찰공고)
 - ※ '24.5월 발주의뢰 했으나, 조달청 내부사정(업무처리 기관결정)으로 사업발주 지연
- '24. 7월 : 계약체결 (주)우남마린과 계약 : 11억9천만원
- 선박 건조 ('24.7~12월) → 선박 납품 및 인수('25.1월)
 - 제작 기간 ('24.7.11 ~ '25.1.7)이 7일 경과로 사고 이월됨
 - ※ 제작사양 : 최고속도 44노트, 시속 81km, 연료탱크 용량증가 ('23년 400L→ '24년 600L), 롤링(좌우흔들림) 및 피칭(앞뒤 흔들림) 현상감소

※ 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5년 5월 27일, 140면 재인용.

-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사업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노후 순찰정 구매사업(’24.6월 발주)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박건조 작업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기 발주 등으로 통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2028년까지 추진하는 노후 순찰정 신규 교체사업(’25년~ ’28년 매년 1정씩 신규 교체 예정)에서 신속한 조기 발주와 순찰정의 연내 건조를 통해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2년간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이월액 ^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사월	사고이월	
202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215,230	1,015,374	708,510	0	306,864	199,856
2024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581,852	1,497,085	1,133,864	0	363,221	84,767

▶ 이월사유

- 2023년 : 순찰정 건조기간 부족으로 납기일 내 순찰정 납품 불가로 계약연장
- 2024년 : 순찰정 구매과정에서 조달청의 업무처리기관 결정이 지연되어 납품 기한이 다음연도 계약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 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은 단지 해당연도 편성 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사고이월과 불용이 연속 발생한 사업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집행에 있어 연례적 이월과 이월 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2024회계연도는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추경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3천 5백만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3천만원)’ 등 증액 2건과 경찰청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사업의 집행잔액 전액(2억 3천 8백만원) 감액 1건 등이 있었음.

〈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총 계	259,211	56,652	Δ202,559	
세출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259,211	21,231	Δ237,980	○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전액 감액 ◦ 사무관리비(151백만원→4백만원) ◦ 공공운영비(106백만원→17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3백만원→0원) ○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0	35,421	35,421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0원→35백만원)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지원과

○ 추경의 증액 사업 중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관련 법령(「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구매를 위해 서울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

〈 2024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과목		당초 예산액	1회 추경	예산 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불용률)	불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자치단체 경장보조금	1,230,625	30,000	1,260,625	1,230,625	0	30,000 (2.4%)	의원 발의로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지원(노원구)을 위해 편성된 추가 경정예산으로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기교부된 사업비와 같은 내용으로 중복 교부와 금지되어 있으며,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집행이 어려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중복 교부 금지4)에 따른 불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와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보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등,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사업의 집행잔액 전액(2억 3천 8백만원) 감액은 경찰청 조직개편(‘23.10.)으로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것이나, 관광경찰대는 관련 법령(「경찰법」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u>관광경찰대 설치·운영</u>

- 그럼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권한 없는 경찰청이 폐지한 것은 서울시의 자치경찰권(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에 대한 침해이며,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자치경찰사무 담당조직을 변경·폐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를 저해한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10월 일부개정·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12호, 일부개정 2023.10.17., 시행 2023.10.30.)는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서울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음.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정은 자치경찰제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자치경찰차장’ 폐지로 1개 조직(범죄예방대응부)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조직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실무협의 및 임용권 행사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조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건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 277억 3천 4백만원 중 268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불용액 4억 6천 5백만원)로 전년(6.1%) 대비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2.7%(일반회계 2.0%, 특별회계 4.4%)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27,733,801	26,833,926	435,221	464,655	1.7
사업예산 계		27,411,282	26,520,135	435,221	455,926	1.7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2,766,186	2,711,941	-	54,245	2.0
	자치경찰 제도 정비	638,564	622,430	-	16,134	2.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2,127,622	2,089,511	-	38,111	1.8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서울 구축	20,160,432	19,816,097	72,000	272,335	1.4
	시-경찰 협력 강화	51,900	51,641	-	259	0.5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20,108,532	19,764,455	72,000	272,077	1.4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4,484,664	3,992,097	363,221	129,346	2.9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98,750	2,064,063	-	34,687	1.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385,914	1,928,034	363,221	94,659	4.0
행정운영경비 계			322,519	313,791	-	8,728	2.7
		기본경비	287,098	278,371	-	8,727	3.0
		재무활동	35,421	35,420	-	1	0.0

○ 2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 ‘국외업무여비’ 1천 1백만원(불용률 38.3%),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30만원(불용률 32.5%),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사업 ‘공공운영비’ 2천 5백만원(불용률 57.1%),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사업 ‘공공운영비’ 1천 5백만원(불용률 92.5%),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사업 ‘공공운영비’ 1천 9백만원(불용률 65.5%) 등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 불용 처리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 이상 불용률 발생 현황 및 불용 사유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국외업무 여비	30,000	18,505	11,495	38.3	‘24년 미국 LA 벨기에 등 두 차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였으나, 예산 절감 노력 및 출장인원 감소 등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자산및물 품취득비	1,300	850	450	34.6	블랙박스 구매(2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기본경비 (자치총괄과)	공공 운영비	2,520	1,380	1,140	45.2	소모품 교체 구입비, 수리비(자기부담금) 등 공용차량 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모품 교체 수요 및 사고발생 건수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
	국내 여비	22,457	15,157	7,300	32.5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에 따라 비전 수립, 비전선포식 등 내부 행사 준비, 자체 시책 개발 등의 업무로 관내외 출장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방범용 CCTV운영 (전환사업)	공공 운영비	43,231	18,528	24,703	57.1	'24년 예산편성 당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이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년치 공공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24년 5월 남은 CCTV 34대를 전부 자치구로 이관 함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불용액 발생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공공 운영비	16,188	1,208	15,080	92.5	기후환경본부(친환경차량과)로부터 실종자 수색용 전기차 5대 지원이 결정('23.7월)되어 '24년도 예산 신청시 해당차량(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23.9월 1대 우선 지원 후 관련 규정*을 사유로 나머지 4대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불용액 발생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 중앙행정기관(경찰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교통홍보활동 (전환사업)	공공 운영비	29,425	10,165	19,260	65.5	기후환경본부(친환경차량과)와 암행순찰차 2대 추가 구매를 논의하였으나, 차량 구매 예산지원이 보류 및 관련 규정을 사유로 차량지원이 되지 못하면서 암행순찰차 차량 개조비 (9,400,000원*2=18,800,000원)이 지출되지 않아 불용액 발생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공공 운영비	40,176	32,105	8,071	20.1	유실물 반환절차 강화에 따른 유실물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1)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총 27개의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2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시가 직접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 예산현액 207억 7천만원 중 204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1.4%(불용액 2억 8천 2백만원)로 전년(6.6%, 불용액 11억 6천 6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음.

※ 2023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 예산현액은 177억 8천 2백만원 중 165억 2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6.6%(불용액 11억 6천 6백만원)임.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 중 “전환사업” 예산 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총 예 산	27,733,801	26,833,926	435,221	464,655	1.7
사 업 예 산 계	27,411,282	26,520,135	435,221	455,926	1.7
전환사업예산 계	20,770,954	20,416,996	72,000	281,958	1.4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 중 “전환사업” 예산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전환사업예산 계	20,770,954	20,416,996	72,000	281,958	1.4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116,077	112,577	-	3,500	3.0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2,278,632	2,129,688	72,000	76,944	3.4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18,804	18,531	-	273	1.5
방범용 CCTV운영(전환사업)	43,231	18,528	-	24,703	57.1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976,840	896,121	-	80,719	8.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79,175	79,175	-	-	0.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전환사업)	202,321	186,321	-	16,000	7.9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101,390	101,389	-	1	0.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91,756	691,104	-	652	0.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621,058	621,048	-	10	0.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330	-	300	0.7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54,034	-	-	0.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 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7,500	7,500	-	-	0.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7,006,020	7,006,020	-	-	0.0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46,625	227,348	-	19,277	7.8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70,430	70,400	-	30	0.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	50,558	50,482	-	76	0.2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658,523	656,032	-	2,491	0.4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313,000	2,265,916	-	47,084	2.0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988,743	1,988,743	-	-	0.0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	2,185,136	2,185,136	-	-	0.0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6,096	36,096	-	-	0.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76,313	176,306	-	7	0.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전환사업)	71,242	62,738	-	8,504	11.9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 (전환사업)	197,706	197,469	-	237	0.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한강경찰대) (전환사업)	513,883	512,733	-	1,150	0.2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1,231	21,231	-	-	0.0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기후환경본부로부터 실종자 수색용 전기차 5대 지원이 결정(23.7월)되어 유지관리비로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9월 1대 우선 지원 후 관련 규정(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2.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경찰청 및 경찰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나머지 4대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1천 5백만원(불용률 92.5%)을 불용 처리하고 있으며,

※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4.2.6.)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기후환경본부와 암행순찰차 2대 추가 구매 논의에 따라 암행순찰차 차량 개조비로 1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경찰청 및 경찰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암행순찰차 차량 개조비 전액(1천 8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사업의 ‘공공운영비’와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차 지원이 제외되어, 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불용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⁵⁾ 통해 ‘공공운영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미집행으로 3천 3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로부터 전기차 지원이 제외된다는 통보를 구두로 2024년 5월말에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음.

-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추경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1819), 제안일 2024년 5월 27일.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다발 구간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사망사고 감소 추진을 위한 것으로, 2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전년(23.4%, 불용액 4억 1천 4백만원)보다 감소한 2.0%(불용액 4천 7백만원)를 불용 처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2022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2023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768,000	1,353,527	0	414,473	23.4
2024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2,313,000	2,265,916	0	47,084	2.0

- 다만, 2024회계연도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은 총 66대(과속 6대, 다기능 29대, 후면 31대) 구매를 위하여 2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매 실적을 보면 139대를 구매하고도 4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과속)30대*30,000,000원+(다기능)28대*3 1,000,000원 = 1,768,000천원	○ 무인단속장비 구매 = 2,313,000천원
		- 과속 6대*29,000,000원 = 174,000천원
		- 다기능 29대*31,000,000원 = 899,000천원
		- 후면 31대*40,000,000원 = 1,240,000천원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

(단위 : 천원, 개)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구매계획	구매실적
무인단속 장비 구매 (전환사업)	'22년	1,221,000	1,134,129	39	54
	'23년	1,768,000	1,353,527	58	88
	'24년	2,313,000	2,265,916	66	139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6월 11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비고
2022년	2단계 경쟁입찰	아이티인 등 3개 업체	에스티엔씨	1,221,000	827,110	-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2개 업체	건아정보	386,600	320,878	
2023년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5개 업체	진우산전	1,868,000	1,061,607	
	2단계 경쟁입찰	토펜스 등 2개 업체	토펜스	818,000	410,000	
2024년	경쟁입찰(이동식)	에스에스티등13개 업체	에스에스티(이동식)	2,313,000	73,142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4개 업체	진우산전(전면)		551,853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3개 업체	건아정보(후면)		496,000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3개 업체	진우산전	1,192,005	588,500	
	제3자 단가계약	-	진우산전 등 3개 업체	603,505	556,421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6월 11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른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최근 낙찰가액 평균단가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노력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연례적 불용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 경비로서,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는 2억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전년(27.2%, 불용액 4천 3백만원) 보다 감소한 4.2%(불용액 8백만원)를 보이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201,691	192,975	8,716	4.3
사 무 관 리 비	113,371	113,096	275	0.2
공 공 운 영 비	2,520	1,380	1,140	45.2
국 내 여 비	22,457	15,158	7,299	32.5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6,600	26,599	1	0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4,200	4,200	0	0
직 책 급 업 무 수 행 경 비	32,543	32,542	1	0

※ 불용사유

- ▶ 공공운영비 : 소모품 교체 구입비, 수리비(자기부담금) 등 공용차량 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모품 교체 수요 및 사고발생건수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
- ▶ 국내여비 :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에 따라 비전 수립, 비전선포식 등 내부 행사 준비, 자체 시책 개발 등의 업무로 관내외 출장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 이 중에서 ‘국내여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사무관리비’로 1천 764만원을 변경사용하고도 32.5%(불용액 730만원)를 불용처리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감액 3천 5백만원)과 2023년(감액 4천 144만원)에는 추경으로 감액하고도,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2년 62.0% → ’23년 29.0%, → ’24년 32.5%), 이는 당초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예산 수립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43,400 (제2회 추경 35,000 감액)	16,504	26,896 (62.0%)	36,960 (제2회 추경 41,440 감액)	26,246	10,714 (29.0%)	22,457 (16,743 변경사용)	15,158	7,299 (32.5%)

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자치구 집행 관리 필요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자율방범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순찰효과의 극대화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를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⁶⁾에 따른 시·구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3천만원을 교부하여 10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3천 7백만원(11.2%)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였음.

6)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재정력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뜻함.

$$\text{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230,625	1,092,828	137,796	11.2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230,625	1,092,828	137,796	11.2

- 이는 일부 자치구(동대문구, 마포구)의 구비 매칭예산 확보 저조,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증가 등으로 발생한 반납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보조금 편성 당시부터 불필요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편성된 예산이 자치구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민경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민경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종로구	57,021	57,021	0	0.0	
	중구	31,325	26,678	4,646	14.8	
	용산구	31,325	31,325	0	0.0	
	성동구	42,215	41,909	305	0.7	
	광진구	36,403	12,976	23,426	64.4	
	동대문구	70,358	39,371	30,986	44.0	
	중랑구	70,052	67,634	2,417	3.5	
	성북구	66,993	66,993	0	0.0	
	강북구	25,696	25,696	0	0.0	
	도봉구	36,403	35,471	931	2.6	
	노원구	39,156	39,156	0	0.0	집행잔액 전액 명시 이월후 2025년 매칭 예산 편성
	은평구	42,215	42,120	94	0.2	
	서대문구	29,061	27,920	1,141	3.9	
	마포구	45,763	27,577	18,185	39.7	

사업명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양천구	71,276	71,276	0	0.0	
	강서구	66,840	66,840	0	0.0	
	구로구	68,064	56,891	11,172	16.4	
	금천구	35,638	33,584	2,053	5.8	
	영등포구	56,776	49,352	7,423	13.1	
	동작구	44,815	39,595	5,220	11.6	
	관악구	60,875	59,032	1,843	3.0	
	서초구	53,839	53,454	384	0.7	
	강남구	36,433	33,591	2,842	7.8	
	송파구	61,915	37,224	24,691	39.9	
	강동구	50,168	50,137	30	0.1	
합 계		1,230,625	1,092,828	137,796	11.2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원구에 2024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3천 9백만원 중 집행잔액 1천 6백만원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승인(‘24.12.31.) 하였는바,⁷⁾ 노원구(구의회 명시이월 승인)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시비 보조금 교부액 대비 구비 매칭액 부족분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한다고 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월을 승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노원구의 보조금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의 명시이월 승인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경우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예산운용사례로 보이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바, 교부된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12747, '24년도 노원구 자율방법대 지원사업 보조금 이월 승인 통보, 2024.12.31. 참조.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사업은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운영 및 여성청소년 기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9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 9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8.3%(불용액 8천 1백만원)를 불용처리하고 있음.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976,840	896,121	80,719	8.3%
사무관리비	976,840	896,121	80,719	8.3%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8억원은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안심 물품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을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지급대상 확대를 위하여 ‘여성안심 물품 지원’ 사업이 2024년 1월 4일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에도 편성된 예산 8억원은 이체되지 않고, 양성평등담당관에서 타 부서(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양성평등담당관은 ‘사무관리비’ 8억원 중 7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8천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여성안심 물품 지원(8억원)비 집행 상세내역

- ’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 7.2억원

○ 안심물품 지원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 2만 대(시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발송)

※ 안심물품 지원사업은 2024.1.4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로 이관된바, 해당 자료는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작성됨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5월 30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 거주자 + 서울 생활권자(서울시 내 직장 재직·학교 재학 등)에게 2만개의 안심벨이 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경보기 미지급)을 범죄피해자 등 안전에 취약한 시민에게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1인가구담당관-3353, 2024.3. 참조).

여성가족정책실(1인가구담당관),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2024.3.14. 참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 거주자 + 서울 생활권자(서울시 내 직장 재직·학교 재학 등)
- (지원물품) 안심벨이 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 ※ 경보기 미지급

○ (지원물량) 20,000개

○ (소요예산) 800백만원(사무관리비)

- 휴대용 안심벨 40,000원(포장,택배 포함) X 20,000개 = 800백만원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 4월 9일 제출자료 참조.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72호, 2025.1.1. 시행))에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부서 예산으로 집행할 때도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된다”고 하고 있는바,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8억원)을 다른 부서인 여성가족실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⁹⁾에 반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여성가족실은 향후 예산을 의회가 심의·확정한 취지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청 교체”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청 교체” 사업은 노후 순찰청을 신규로 구매하여 사고위험 예방, 신속한 신고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청 교체 사업은 '23년 ~ '24년 중형 4정 건조 완료하였고, '25년 ~ '28년 매년 1정씩 신규 교체 예정이라고 함.

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024년 12월, 54면 재인용.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분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7조).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2023년 7월, 363면 참조).

- 동 사업은 2023년에는 중형 2대와 소형 1대를 신규 구매할 수 있도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형 2대(중형 1정당 6억3천만원, 총 12억6천만원)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매 잔액은 한강순찰대 이촌계류장 설치를 위하여 변경사용(4천만원) 하였고, 순찰정 구매 예산 낙찰차액 일부(4천 5백만원)를 여의도본대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위하여 변경사용하였고, 순찰정 건조 마감이 당초 2023년 12월이었으나, “건조기간 부족으로 납기일 내 순찰정 납품 불가로 계약연장”에 따라 3억 7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도, 2억원(불용률 16.4%)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에는 중형 2대 신규 구매를 위하여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강경찰대 정원 증가(39명 → 52명)에 따른 신규 수상요원 잠수장비 구매를 위하여 변경사용(1억 2천 5백만원) 하였고, 조달청 내부 사정으로 입찰이 늦어져 순찰정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의 건조 기간 소요로 완공시기를 다음연도('25.1.7)까지 계약함에 따라 3억 6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도, 8천 5백만원(불용률 5.4%)을 불용처리하였음.

〈 최근 2년간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사업의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20 2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	△40,000	0	2023.8.17.	1,260,000	추가 변경사용으로 3번째 행 후술	
	지역치안생활 안전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시설비	100,000	0	40,000		140,000	122,998	17,001 (87.9%)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0	△44,770	0	2023.11.14.	1,215,230	708,510	199,855 (16.4%) ※약 10%인액 306,864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시설비	101,000	0	44,770		145,770	145,770	0 (0%)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2024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0	△125,012	0	2024.9.4.	158,852 ※전년도이월액 306,864	1,133,864	84,767 (5.4%) ※전년도이월액 363,221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36,591	0	125,012		161,603	161,603	0 (0.0%)

〈 최근 2년간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2023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1,215,230	708,510	306,864	199,856	16.4
2024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1,581,852	1,133,8640	363,221	84,767	5.4

- 자치경찰위원회는 2년 연속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반복적인 이월과 과도한 불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만한 예산 집행 행태로,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순찰정 건조를 위한 입찰 공고·협상·계약과 같은 절차는 시간과 행정적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바, 순찰정 구매·건조 등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일정 점검을 통한 사업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관리 철저 필요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동안전지킴이 등 활동비(전환사업)”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2건으로 교부액은 71억 2백만원이며,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¹⁰⁾ 교부액은 3천 2백만원으로, 총 교부액 71억 3천 4백만원 중 68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7천만원(3.8%)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였음.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차량 임차료,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2024회계연도에 신규 편성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92,290	7,710	0	0	7,710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2,123	32,105	18	0	0	18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2,006	6,739,316	262,690	0	0	262,690
합 계		7,134,129	6,863,711	270,418	0	0	270,418

- 이 중 대한노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0억 2백만원을 교부하여 67억 3천 9백 만원을 집행하고, 2억 6천 3백만원(불용률 3.7%)을 반납하였음.

1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민간보조사업 예산도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반납액은 최근 3년 연속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하게 불용 처리하고 있는바(’22년 1억 4천 4백만원, ’23년 1억원, ’24년 2억 6천 3백만원),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 확보 및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소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22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428,067	6,283,435	144,632	0	0	144,632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23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6,696,810	100,498	0	0	100,498
2024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7,002,006	6,739,316	262,689	0	0	262,689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부서별 ‘사무관리비’는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의 ‘사무관리비(1억 4천 6백만원)’ 감액에 따른 예산현액은 57억 9천 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56억 9천 7백만원으로 98.0%를 집행(집행잔액 9천 8백만원, 불용률 2.0%)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초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또는 초과 집행,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한 항목이 있었음.

-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중 망원, 이촌, 광나루센터의 ‘업무대행 수수료(소산비 등)(1천 2백만원)’ 등은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 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세부산출기초)’ 중 예산현액 집행 20% 미만 내역 〉

(단위 : 원, %)

부서 및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대학생 순찰대 모집 및 운영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및 순찰안전교육	880,000	0	880,000	0
	대학생 순찰대 모집(인쇄물)	300,000	0	300,000	0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소규모수선비	120,000	-	120,000	0
다중운집행사 등交通安全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 (회의실 대관비)	12,500,000	2,538,100	9,961,900	20
자치경찰협력과 기본경비	소규모수선비	90,000	0	90,000	0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안서 평가	1,200,000	-	1,200,000	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한강경찰대) (전환사업)	전문화 교육비(인명구조자격 등) - 트레일러 운전면허 신규 취득 등	775,000	-	775,000	0
	업무대행 수수료(소산비 등) 망원센터	3,080,000	-	3,080,000	0
	업무대행 수수료(소산비 등) 이촌센터	7,600,000	-	7,600,000	0
	업무대행 수수료(소산비 등) 광나루센터	1,350,000	-	1,350,000	0
자치경찰지원과 기본경비	도서구입비	150,000	-	150,000	0
	이호조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650,000	-	650,000	0

- 또한,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은 1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천 175만원을 집행하여 1천 625만원(205.0%)을 초과 지출하고, 자치경찰지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행정장비수리비’는 126만원 편성하여 990만원을 집행하여 846만원(786.0%)를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세부산출기초)’ 중 150% 이상 초과 집행현황 〉

(단위 : 원, %)

부서 및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반려견 순찰대 활동 운영 그레이트 한강 등 합동순찰, 캠페인	3,300,000	5,350,000	-2,050,000	162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기본사무용종이류	497,000	1,104,800	-607,800	222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무인단속장비 납품업체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50,000	1,600,000	-1,150,000	356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 -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5,500,000	31,755,550	-16,255,550	205
자치경찰협력과 기본경비	기타 소모품 유지 보수 등	500,000	3,771,600	-3,271,600	754
	협의회 회의자료 등 인쇄	500,000	1,426,900	-926,900	285
	기본사무용종이류	373,000	2,041,600	-1,668,600	547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기본사무종이류	3,768,000	5,664,000	-1,896,000	15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 (전환사업)	기본사무용종이류	808,000	1,308,000	-500,000	162
	전산소모품(토너 등)	176,000	424,000	-248,000	241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1,600,000	2,473,000	-873,000	155
	전문화 교육비(인명구조자격 등)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등	231,000	462,000	-231,000	200
자치경찰지원과 기본경비	행정장비수리비	1,260,000	9,900,000	-8,640,000	786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자의적 예산집행은 지양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당시 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운용 기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